



長錦商船株式會社

Sinokor Merchant Marine Co., Ltd.



<http://www.sinokor.co.kr> TEL:(02)774-1422 / FAX:(02)774-8483 / TLX:K23920

수 신 : 화주 제위
발 신 : 장금상선 주식회사
제 목 : 서류발급비(Documentation Fee) 조정 시행건

DATE :2015.10.26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그 동안 베풀어주신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.
2. 당사는 귀사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적기, 안정적 수송 체계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.
- 3 표제의 건 관련하여 전 항로 수출/수입 서류 발급비(Documentation Fee)를 아래와 같이 조정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- 시행항목 : 서류발급비(Documentation Fee)
- 시행항로 : 전 항로 (한중,한일,INTRA ASIA,러시아) 수출/수입 화물 (인천/위해 항로 제외)
- 시행일자 : 2015년 11월 2일 선적지 출항 부터(수출/수입 동일)
- 변경전 요율 : ₩35,000 / BL , DO 건당
- 변경후 요율 : ₩40,000 / BL , DO 건당

4. 감사합니다.